

七. 감 사 의 건 서

농협법 제71조에 의하여 서기 2018년 1월 15일 조합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결산보고서 【사업보고서, 재무상태표, 손익내역표,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】의 각 사항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그 내용이 적합함을 인정함.

서기 2018 년 1 월 18 일

감 사 이 재 감 (인)

감 사 백 귀 선 (인)